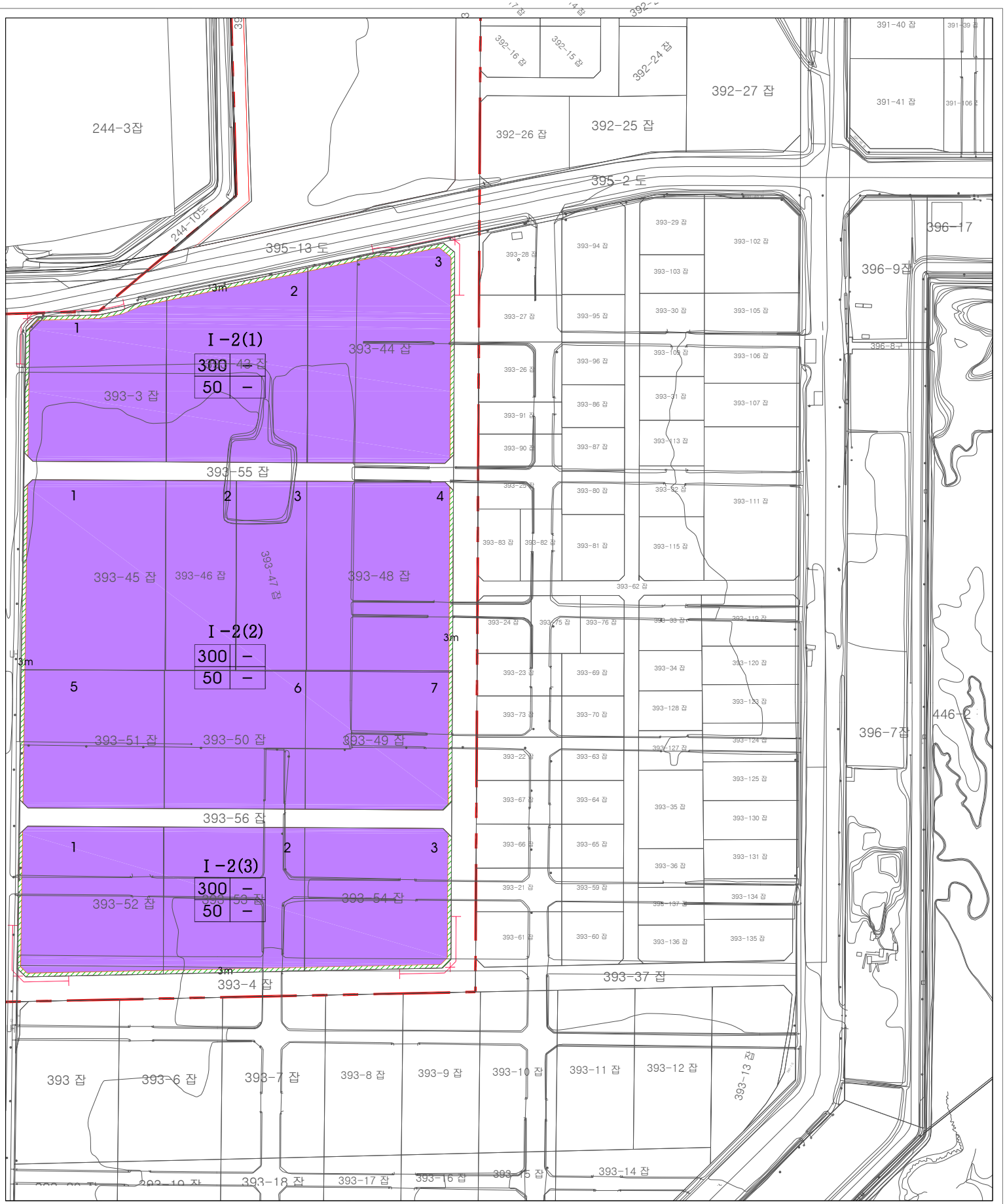

본 고시도는 변경부분에 한하여 유효 함.

도시관리계획(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도

– 건축물에 대한 용도 · 건폐율 ·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 –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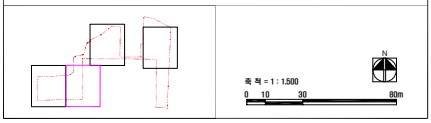

- 지구단위계획구역
- 가 구 선
- 필 지 선
- 공 업 용 지(I)
- 전 면 공 지
- 건축한계선
- 차량출입불허공간

용적률	최고높이
건폐율	최저높이

구 분	입안 및 결정권자	
	1차 확인자	2차 확인자
소 속	도시계획과	도시계획과
직 위	–	지구단위계획담당
직 명	지방시설주사보	지방시설사무관
성 명	구 현 호	서 강 원
확인 (인)		

지 정 권 자	인천광역시장
지 정 일 자	2017년 10월 16일
고 시 년 도	2017년
고 시 번 호	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7-240호
작 성 자	인천광역시장
작 성 일 자	2017년 10월 16일
저작권소유 및 보호	인천광역시장